

의안번호	2210579
의 퇴 인	최보운 의원
회 답 일	2025.6.30.
추계번호	25C2963

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8조(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)	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
2	안 제19조(기금의 재원)	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함 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.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.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
3	안 제20조(기금의 용도)	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 1.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2.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.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.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 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8조(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9조(기금의 재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20조(기금의 용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정부 출연금 지급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·노인·임산부의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4조의 이행강제금¹⁾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연구개발사업, 기술지원사업, 교육·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개정안 제20조 기금의 용도와 현행 사업(2025년)과의 비교

개정안 제20조(기금의 용도)	사업명	예산(천원)
1.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	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방안 연구	20,000
	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	4,000
	편의증진기술위원회	5,000
	장애인전용주차구역민관합동점검	6,500
2.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	기술지원 및 교육(민간교육, 온라인교육, 법령집 등 자료제작)	19,000
	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지원(현장 업무 감독 및 지원)	3,000
	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시설기준 충족지원 및 적합성 심사 대행 사업	40,000
3.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	편의증진 교육(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, 건축사 실무교육)	30,000
	UD인식확산사업(공모전, 국제세미나, 전시/체험)	359,000
	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	4,280
	편의증진의 날 기념식	15,000
4. 그 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등 관련 사업	BF인증 정보시스템 구축	44,600
	BF인증 사후관리(인증기관 합동사후관리)	40,400
	BF인증 제도개선 연구	30,000
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인증 운영기관 업무 수행	185,000

자료: 보건복지부

- 1) 제24조(이행강제금)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-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 <중략>
-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- 개정안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제1호(연구개발사업), 제2호(기술지원사업), 제3호(교육·홍보사업)에 해당하는 사업은 현재 수행 중이나, 제4호(자금의 용자·보조사업)의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추가로, 개정안에서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·정부 외 기부금(제1호)과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행강제금은 2021년 441만원(2건), 2022년 632만원(3건), 2023년 299만원(4건), 2024년 482만원(3건) 부과·징수되어 안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, 향후 기금 운용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안 제19조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정부 외 기부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될 사업의 범위·규모와 기금의 원활한 집행·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출연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 - 또한,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·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